

인천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가단214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8. 10.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3. 17. D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연 27.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9가소523943)를 제기하여 2019. 10. 31. C은 원고에게 4,053,087원 및 그 중 2,700,85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02년경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은 2003. 4. 15. F 유한회사에, 2006. 10. 25. 주식회사 G에, 2011. 4. 26. H 유한회사에, 2019. 1. 25. 원고에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에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0가소529376)를 제기하여 2020. 11. 25. C은 원고에게 121,886,842원 및 그 중 22,764,110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가. 나.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17. 6. 1. 이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2018. 1. 12. 무렵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에 21,66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망 I(2018. 6.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J, K, L, M, C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0. 2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21,665,000원 상당의 채무와 이 사건 양수금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장기간 망인과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피고나 망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러한 취지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과 1969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O일자 C을 출산하였고, 망인의 전처가 1994. 9. 20. 사망하자 1995. 2. 6.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1993. 5.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J, K, L, M은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의 유일한 친자식인 사실, C은 2003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